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운영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각각의 기관을 상대함으로써 업무의 기중을 초래하고 있다.

② 단일화의 문제 : 위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중복 업무 및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 III. 결 론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산업의 특이성이 많은 건설업에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보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함으로써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되는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료(직업능력, 고용안정) 보고·납부는 산재보험에서 통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업장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을 국민연금에서 흡수·관리하면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등 자격관리가 용이하며 업무 창구의 최소화로 불요불급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 고용보험심사관의 관할권 문제

양 재 삼\*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둔 (주)○○은행의 대전시 대홍동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를 받고, 전주지방노

동사무소를 거쳐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수급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현재의 고용보험심사관 관할권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장

이는 마치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 회보한 종로 3가 관내소재 갑을산업(주)에 대한 「재해사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연고지인 전주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①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재해사고조사 이의제기에 대하여 ② 전주지방노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인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종로 3가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제도라면 이것은 분명히 ①항과 ②항이 모두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현행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전주)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거주지(전주)와 본사(서울)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사에서 정한 대상과 기준, 방법, 절차에 의해 전국적·일괄적으로 실시된 명예퇴직의 경우,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직(명예퇴직) 실태를 조사후 교부한 이직증명서의 이직유형 판단을 기초·근거로 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본사에 의해 전국적·일괄적으로 실시된 동일한 명예퇴직에 대하여 지방사무소간 수급자격 판단에 대한 불일치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본사(전국일원)에 걸쳐 지점, 지사, 공장이 소재한 업체의 본사)에 의해 전국적·일괄적으로 실시된 동

일한 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판단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마다 개별적인 실태조사는 지양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인의 거주지를 위주로 한 개인별 실태조사도 지양하는 것이 업무수행의 신속은 물론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본사에 의해 전국적·일괄적으로 실시된 동일한 명예퇴직자가 해당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를 받고 원처분청(거주지 관할지방사무소)을 거쳐 원처분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각청 심사관마다 '원처분 취소'나 '심사청구 기각'으로 결정을 각각 달리 한다면, 대내외적으로 노동행정의 신뢰 손상은 물론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은 뻔하다.

따라서 본사에 의해 전국적·일괄적으로 실시된 동일한 명예퇴직의 경우 전국 각청마다 접수된 심사청구서 중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현행 고용보험 심사관 관할권제도의 업무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첫째,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청(거주지 관할 지방사무소)을 거쳐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최초 명예퇴직 이직유형판단 지방사무소)관할 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

사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서의 접수가 본사가 많은 지방노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편중될 수 있지만 본사(전국 일원에 걸쳐 지사, 지점, 공장이 산재한 업체의 본사)에 의한 동일한 명예퇴직의 경우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사고 발생시 관내) 관할 지방노동청 심사관이 취급함으로써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사태발생에 대하여 조사(탐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심사청구서 결정서 작성에 일관성과 신중성을 가져올 수 있고,

둘째, 현재 각청에 고용보험심사관을 두는 제도를 노동부(본부)내에 5명의 고용보험심사관을 두도록 하여 이곳에서 심사청구서를 접수·처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심사관마다 업무가 고르게 될 것이고, 동일한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청구서의 결정서 작성에 있어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 본사의 명예퇴직 실시관련 자료, 기타

관계인을 상대로 다시 조사후 결정을 함으로써 결정서 작성에 일관성과 신중성을 가져올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고용)유지와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원상회복·충당이라는 보험원리에 기초하면서 고용보험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항상 엄격한 요건과 판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조업(국내 제조업에서 파생된 판매서비스업종 포함)의 성장이 취업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고 고용안정의 전실한 성장을 가져다 주므로 고용보험금 지원제도를 제조업종에 중점을 두면서 시행해 나가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금 지원이 금융·보험업종과 사회서비스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 흘러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